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|   |  |      |       |
|---|--|------|-------|
| 심의일자  | 2018.2.27.(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
| 사업명/신청위치  | 신대방동 355-30 장기전세주택 신축공사 / 동작구 신대방동 355-30번지 일대 |      |       |
| 의결번호  | 2018-04-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의결과 | 조건부의결 |
| [심의 내용] 건축  |  |      |       |
| 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 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  |  |      |       |
| 〈 건축 분야 〉   |  |      |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   |  |      | 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주동 상가 포디움 위 아파트 저층부의 획일적인 대리석 마감재료 조정(삭제) 검토 바람.</li><li>○ 변경된 43A형의 거실, 침실은 각 실의 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위치 변경 바람 - 기둥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할 것.</li><li>○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의 보완·안전을 위하여 인지성이 확보되도록 입면계획 특화 바람.</li><li>○ 102동의 환기창은 바람의 속도가 강해서 소음발생 우려가 있으며, 환기에 불리하므로 개선방안 검토 바람.</li></ul> |  |      |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조경   |  |      | 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공개공지1은 통로 중심의 기존 계획보다 목재데크와 야외카페 분위기의 휴식공간을 배치하도록 검토 바람.(권장)</li><li>○ 공개공지2는 도로변에서 공개공지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시형 또는 전망창으로 개방감 있게 보완하는 방안 검토 바람.(권장)</li></ul>   |  |      |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교통   |  |      | 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드롭존 출입구는 2개소는 보행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출구와 입구를 1개소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바람(권장) <span style="float: right;">-계속-</span></li></ul>  |  |      |       |

**2018.2.27.**  
**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**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|          |  |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|------|-------|
| 심의일자     | 2018.2.27.(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
| 사업명/신청위치 | 신대방동 355-30 장기전세주택 신축공사 / 동작구 신대방동 355-30번지 일대 |      |       |
| 의결번호     | 2018-04-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의결과 | 조건부의결 |

[심의 내용] 건축

## < 공통사항 >
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  
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녹색건축 최우수(그린1)등급 이상  
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: 1등급 적용,  
다.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13.95%이상 적용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.
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<sub>2</sub>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
  - 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
  -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끝.

2018.2.27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